

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991. 11. 22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1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 73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1. 11. 21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중등교육국장 나세옹)

가. 제안 사유

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도서관이 흡수되고
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서직급의 명칭 변경과 도서관 진흥법
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의하여 도서관 사용료 징수 범위를 개정하
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충청북도 학생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학생도서관 관련 부분을 삭제함.
- 2)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서직급의 명칭을 변경함.
- 3) '92년도부터 도서관 사용료가 면제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 사용료 범위를 채 조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바, 충청북도 학생회관의 설치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도서관이 흡수되어 충청북도 학생도서관 관련 부분이 삭제되며,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서직급 명칭이 변경되고 도서관 진흥법 제29조(법률 제 2352호)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됨에 따라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

7. 소수 의견 요지 : 해상사항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9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.